

동두천시에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의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보고서 채택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우리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관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도모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액을 10억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함.
- 장학생의 선발대상을 정함.
-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액을 정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내고장 학교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

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기금운영의 투명한 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음.

그러나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동두천시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적 기금 설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할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